공주대학교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지침

제정 2006. 11. 8.
개정 2010. 1. 1.
개정 2011. 3. 1.
개정 2012. 3. 1.
개정 2014. 4. 21.
개정 2016. 3. 1.
개정 2021.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대학교 게스트하우스(이하"게스트하우스"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운영은 학생생활관(예산캠퍼스, 천안캠퍼스는 분관)(이하"학생생활관(분관)"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3조(유지관리비의 보조) 게스트하우스의 시설물 유지 및 일상 운영경비는 자체수입 및 대학회계에서 부담한다.

제4조(사용대상자)

①게스트하우스 단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대학의 총장
2. 국내·국제 교류협정을 위한 대학 방문자
3. 장·단기 초청 및 방문 외국인
4. 본교의 학회·세미나 등 공식적인 행사의 참석 내·외국인
5. 본교 교직원이 특별한 공무를 수행할 경우
6. 본교의 행정관련 유관기관
7. 기타 학생생활관(분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②게스트하우스 장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관련 외국인 교수(객원교수 포함), 원어민강사(부서추천), 교직원, 관사 제공 대상자(총무과 추천)
2. 기타 학생생활관(분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5조(사용신청)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게스트하우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장 또는 해당부서장・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련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용 개시일 최소 7일전까지 학생생활관(분관)에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취소 및 변경) 게스트하우스 사용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입실 3일전까지 변경사항이 기록된 관련 공문을 학생생활관(분관) 행정실로 제출・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

①게스트하우스 단기이용자의 사용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 학생생활관(분관)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 할 수 있다.

②게스트하우스 장기이용자는 월 단위 사용만이 가능하며, 신청 횟수는 1회(사용기간 최대 12개월)로 한다.

* 다만, 사용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외국인 교수와 원어민강사는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학생생활관(분관)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사용승인은 신청서 접수순으로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 업무 수행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생생활관(분관)장은 사용 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내부시설 개조 및 구조변경을 금지한다.
2. 생활관생의 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모든 행동(음주, 도박, 고성 등) 및 위험물 사용(전열기, 조리기구 등)을 금지한다.
3. 입실일 및 퇴실일자를 준수한다.
4. 사용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5. 열쇠(출입카드)의 수령과 반납은 학생생활관(분관) 행정실에서 하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6. 사용 종료 시 게스트하우스의 내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기타 관리기관에서 특별히 요청한 사항에 따라야하며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위한 직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건물 및 실내에서는 금연해야 한다.
9. 화재(호실 내 조리 금지)・도난・안전 관리 등을 철저히 한다.
10. 이용자의 반입물품에 대한 보관·관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1. 학생생활관(분관)의 허가 없이는 외부인이나 방문자(가족포함)를 대동하여 관내에 출입할 수 없다.
12. 학생생활관(분관)에서 요구한 출입시간을 엄수한다.

제10조(퇴실) ①사용자 추천부서는 사용자가 퇴실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및 추천부서는 퇴실일시 엄수, 지급된 모든 물품 확인, 관리부서와 지급물품의 인계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손·망실된 물품은 현재 시가로 변상토록 하되, 사용자가 변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천부서가 그 책임을 진다.

③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퇴실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이 지침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 사용신청서에 기록된 자 이외의 자가 거주하는 경우
4. 기타 관리기관이 긴급한 사정으로 퇴실을 요청할 경우

제11조(변상책임)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게스트하우스내의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부담) ①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실비징수금액[별표1], [별표2], [별표3]은 학생생활관(분관)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게스트하우스 사용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소 속 기 관		직위(급)	
	성 명		연락처(H·P)	
신청 숙소 (해당란에 ○표시)	단기숙소		장기숙소	
사 용 자 인적사항	인 원	남자: 명, 여자: 명 (합계: 명)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소 속			
	근무기관			
	신청자와의 관계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퇴실예정일시			
	신청사유			
	연락처(H·P)			

위와 같이 공주대학교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서류 1부.

년 월 일

사용신청부서의장 직인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분관)장 귀하

[별표1]

공주캠퍼스 게스트하우스 단·장기 숙소 이용료, 할증료 및 위약금 부과표

1. 단기숙소

구 분	내 용	비 고
숙소위치 (드림하우스)	- 1인실: B동1311호, 1312호, 1313호 - 2인실: B동 1501<1실>	
이용료(1일)	- 1인실: 25,000원 - 2인실: 40,000원	이용료 후납
취소 위약금	- 위약금 없음	

2. 장기숙소

구 분	내 용	비 고
숙소위치 (드림하우스)	- 1인실: B1301호 ~ B1310호<10실>, B1314호~B1319<6실> B1410호, B1610호<2실> <총 18실>	공실: 단기숙소로 운영
이용조건	- 반드시 월 단위로 사용 가능(최소 1개월) - 1년 약정 사용 시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함 - 1일 계산법: 이용료÷30일(원단위 절사) - 이용기간 변경 요청: 최소 7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이용료(1개월)	- 1인실: 300,000원	이용료 후납 매월 30일 납부 (식비제외)
수용인원	- 여교수회: 3명(2명: 여교수회 추천, 1명: 생활관장 추천) - 외국인교수: 2명(교무과 추천) - 원어민강사: 5명(관련 부서 추천) - 직원: 3명(개인 신청 후 생활관장 선정) - 남교수: 3명(개인 신청순 후 생활관장 선정) - 관사 제공 대상자: 2명(총무과 추천)	

[별표2]

예산캠퍼스 게스트하우스 단·장기 숙소 이용료, 할증료 및 위약금 부과표

1. 단기숙소

구 분	내 용	비 고
숙소위치 (예지사)	- 1인실: 611호<1실> - 2인실: 602호 ~ 607호, 609호<7실> ※ 장기숙소와 병행하여 운영	총 8실
이용조건	- 타부서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공동사용	
이용료(1일)	- 20,000원(1인사용 1숙박) - 15,000원(공동사용 1숙박)	이용료 후납
추가 비용	- 침구 추가 사용 시 1인당 10,000원의 할증료 부과	
취소 위약금	- 위약금 없음	

2. 장기숙소

구 분	내 용	비 고
숙소위치 (예지사)	- 1인실: 601호, 608호, 612호 ~ 614호<5실> - 2인실: 602호 ~ 607호, 609호<7실> ※ 단기숙소와 병행하여 운영	총 12실
이용조건	- 반드시 월 단위로 사용 가능(최소 1개월) - 1년 약정 사용 시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함 - 1일 계산법: 이용료÷30일(원단위 절사) - 이용기간 변경 요청: 최소 3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이용료(1개월)	- 1인실: 250,000원 - 2인실: 400,000원(1인이 사용할 경우 350,000원) - 2017학년도까지는 별도 이용료를 부과하고 2018학년도부터 공주캠퍼스, 천안캠퍼스와 같은 금액을 부과한다.	이용료 선납
취소 위약금	- 1일전 취소: 위약금 없음 - 입실 당일부터 입실기간 1/2선까지: 잔여기간 이용료의 50% 공제 후 환불 - 입실기간 1/2선 초과부터: 환불금 없음	

[별표3]

천안캠퍼스 게스트하우스 단·장기 숙소 이용료, 할증료 및 위약금 부과표

1. 단기숙소

구 분	내 용	비 고
숙소위치 (챌린지하우스)	- 1인실: A1805호 ~ A1807호, B1705호 ~ B1706호<5실> - 2인실: A1802호 ~ A1804호, B1702호 ~ B1704호<6실> ※ 장기숙소와 병행하여 운영	총 11실
이용조건	- 타부서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공동사용	
이용료(1일)	- 25,000원(1인사용 1숙박) - 20,000원(공동사용 1숙박)	이용료 후납
추가 비용	- 침구 추가 사용 시 1인당 10,000원의 할증료 부과	
취소 위약금	- 위약금 없음	

2. 장기숙소

구 분	내 용	비 고
숙소위치 (챌린지하우스)	- 1인실: A1805호 ~ A1807호, B1705호 ~ B1706호<5실> - 2인실: A1802호 ~ A1804호, B1702호 ~ B1704호<6실> ※ 단기숙소와 병행하여 운영	총 11실
이용조건	- 반드시 월 단위로 사용 가능(최소 1개월) - 1년 약정 사용 시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함 - 1일 계산법: 이용료÷30일(원단위 절사) - 이용기간 변경 요청: 최소 7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이용료(1개월)	- 1인실: 300,000원 - 2인실: 500,000원(1인이 사용할 경우 400,000원)	이용료 후납 (식비제외)